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44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 의 자 : 홍영진, 김도운, 강혜순
문희성, 정재환, 문기호
이명녀, 박경흠, 김태욱
안영호

1. 개정이유

사람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 맞춰 제도적 준비를 통해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나아가 도시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지원 개정(안 제8조)

-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사항 추가
- ‘친환경농업 및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사항 추가
-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사항 추가
- ‘도시농업 관련 학습·생태체험터밭 조성사업’ 사항 추가
- ‘상자텃밭 보급사업’ 사항 추가
-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농자재 등의 보급사업’ 사항 추가
-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행사지원 사업’ 사항 추가
- ‘그 밖의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항 추가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5. 6. 20. ~ 6. 27.(7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말 체험영농”을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관련 학습 · 생태체험텃밭 조성사업
5. 상자텃밭 보급사업
6.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농자재 등의 보급사업
7.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행사지원 사업
8. 그 밖의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p> <p>2. 친환경농업 및 주말 체험영농</p> <p>3. 제6조의 교육</p> <p>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8조(보조금의 지원) -----</p> <p>-----</p> <p>-----</p> <p>-----</p> <p>-----</p> <p>-----.</p> <p>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p> <p>2. ----- 도시농업 체험 활동에 관한 사업</p> <p>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p> <p>4. 도시농업 관련 학습 · 생태 체험텃밭 조성사업</p> <p>5. 상자텃밭 보급사업</p> <p>6.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농자재 등의 보급사업</p> <p>7.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행사지원 사업</p> <p>8. 그 밖의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근 거 법 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예산수반이 필수적이거나 지원에 대한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수립 없이는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3. 작성자

- 소 속: 경제정책과
- 직 급: 농업6급
- 성 명: 조훈기
- 연락처: (052)290-3341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들에게 친환경도시농업 참여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개인정서 함양, 지역공동체의식 회복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영농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9.>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9.>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2장 도시농업 활성화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4. 12. 29.>

② 기본계획에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시책방향
2. 여건 변화와 전망
3. 시설기준 설정
4.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농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도시텃밭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도시텃밭을 그 분양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도시텃밭이 조성된 토지에서 그 조성 전부터 경작하던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은 도시텃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친환경농업을 실시해야 한다.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임차인이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한 도시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⑤ 도시텃밭의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 ②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상자텃밭을 보급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3장 도시농업 지원사업

제6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기술 보급,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2. 친환경농업 및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관련 학습 · 생태체험텃밭 조성사업
5. 상자텃밭 보급사업
6.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농자재 등의 보급사업
7.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행사지원 사업
8. 그 밖의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술의 교류 · 홍보) ① 도시농업 관련단체,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 도시텃밭 · 상자텃밭의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준용)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